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질병관리청 내 예방접종 이상반응 및 백신 수급 관리 담당 인력 2명(6급 2명)을 증원하고,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 내 국가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및 생명연구자원선진화 담당 인력 3명(연구관 1명, 연구사 1명, 6급 1명), 국립인천공항검역소 내 현장 검역 대응 인력 12명(6급 1명, 7급 1명, 8급 3명, 9급 7명)을 증원하며,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역학조사관 76명(연구관 5명, 5급 37명, 6급 34명)을 증원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.

또한, 신규인력으로 증원된 검역업무 담당인력 1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3항 중 “43명(5급 31명, 6급 5명”을 “79명(5급 49명, 6급 23명”으로 한다.

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의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40명(5급 19명, 6급 16명, 연구관 5명)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별표 4 중 총계 “435”를 “47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434”를 “47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24”를 “467”로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“875”를 각각 “925”로 하고, 3급 또는 4급 이하 “865”를 “915”로 한다.

별표 6 제2호나목에 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) 검역 업무(국립검역소)	12명	2024년 12월 31일까지
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4조제3항 및 제35조제3항,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정원에 관한 특례)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4월 30일까지는 각각 별표 4의2의 개정규정, 별표 5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4조(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의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<u>43명(5급 31명, 6급 5명, 연구관 7명)</u>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제3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4조(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79명(5급 49명, 6급 23명)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35조(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 및 별표 5에 따라 질병관리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7호의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<u>40명(5급 19명, 6급 16명, 연구관 5명)</u>은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4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제34조제1항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•		•		
			<u>435</u>		<u>478</u>		+43
			•		•		
			•		•		
일	반	직 계	<u>434</u>		<u>477</u>		+43
			•		•		
3	급	또는 4급 이하	<u>424</u>		<u>467</u>		+43
			•		•		

[별표 4의2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대통령령 제00000호 질병관리청과 그
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•	•	•	•	•	•
			<u>435</u>	<u>437</u>		+2	
일	반	직	•	•	•	•	•
계			<u>434</u>	<u>436</u>		+2	
3	급	또는 4급 이하	•	•	•	•	•
			<u>424</u>	<u>426</u>		+2	
		•	•	•	•	•	•

신·구정원대비표

■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[별표 5]

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•	•	•	
총 계	<u>875</u>	<u>925</u>	+50
일반직 계	<u>875</u>	<u>925</u>	+50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865</u>	<u>915</u>	+50

[별표 5의2]

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(대통령령 제00000호 질병관리청과 그
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875	890	+15
일반직 계	875	890	+15
3급 또는 4급 이하	865	880	+15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1